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8049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8049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59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593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121,8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 일부인 16,510,570원 부분만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구례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5. 2.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피고 소유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원고 개인이 그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더 나아가 원고가 원고 자신의 고유 자금으로 피고 소유 명의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2022.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재산세 및 각종의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박은주, 판사 변종두